

	<h2>대학발전위원회규정</h2>	규정번호	5-0-34
		제정일자	2015. 3. 1.
		개정일자	2026. 3. 1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경민대학교 대학발전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.)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)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이 되고, 보직교수 등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(개정 2023.3.1., 2023.9.1., 2026.3.1.)

②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.

제3조(임기) 위원회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4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대학운영의 전반적인 기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
2. 대학 발전계획/특성화계획의 추진 및 관리에 관한 사항
3. 기타 학교발전에 관한 사항

제5조(회의 소집 및 의결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필요한 경우 총장이 위원장에게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6조(세부사항)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